

- 제3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-

의안 검토보고서

검토안건

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>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금성

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

1. 회부경위

O 의안번호 : 제80호

O 제 출 자 : 정기수 의원 등 3인

O 제 출 일 : 2024. 8. 20.

O 회 부 일 : 2024. 8. 22.

2. 개정이유

○ 금산군 결산검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할 실 비보상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, 전반적인 기존 조례의 조문 중 미흡 한 사항 혹은 법률과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을 일제 정비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O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방법 및 자격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O 결산검사위원의 결격 사항(안 제5조)
- 결산검사위원의 대표위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군수의 결산검사 협조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O 결산검사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(안 제 9조~안 제10조)
 - 일비 : 70,000원 → 150,000원

4. 참고사항

- O 관계법령
- 「지방자치법」제150조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82조에서 제84조까지

5. 검토의견

-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금산군 결산검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보상 및 위원 정수 등 전반적인 기본 조례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,
- 그동안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보상과 관련하여 타 시·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바 이를 반영하여 적절히 산정하였고, 위원정수도 기존 3명에서 10명 이내였던 것을 5명에서 10명 이내로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였다고 사료되며,
- 그밖에「지방자치법」제150조,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82조, 제83조, 제84조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